

제2025-87호 2025년 9월 30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4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1
- 여수시 고시 제2025-42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2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62호 「어선안전업 및 어선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반송분 공시용달 3
- 여수시 공고 제2025-2875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5
- 여수시 공고 제2025-2878호 전문건설업 폐업·주식회사 내일건설 7
- 여수시 공고 제2025-2881호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전환영역 영향평가서 행정예고 8

입 법 예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71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조 례

- 조례 제2229호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17
- 조례 제2230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조례 제2231호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조례 제2232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조례 제2233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조례 제2234호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34
- 조례 제2235호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조례 제2236호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조례 제2237호 여수시 여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60
- 조례 제2238호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 조례 제2239호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 67
- 조례 제2240호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72
- 조례 제2241호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76
- 조례 제2242호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80
- 조례 제2243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 조례 제2244호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86
- 조례 제2245호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 조례 제2246호 여수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 조례 제2247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 조례 제2248호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113

규 칙

○ 규칙	제865호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8
○ 규칙	제866호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131
○ 규칙	제867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3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 - 4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고시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인 자	
					성 명	주 소
2025-024 (‘25. 9. 26.)	여수시 남면 두라리 165-1번지 지선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사용 가도 및 임시적치장 설치	1,870.2	‘25. 9. 26. ~ ‘26. 3.2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해양정책과)

2025. 9. 26.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26.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위반사항인 안전조업교육 미이수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등기우편)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9. 26. ~ 2025. 10. 17.(21일간)
3. 공고장소: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4. 관련법규: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및 동법 제58조제5항제5호(과태료)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사전납부금액)	반송사유
양*운	1958.11.05.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7, 301동 902호(돌산청솔3차)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안전조업교육 - 2024년 미이수)	금450,000원 (360,000원) ~2025.10.17.	폐문부재

6. 기타사항

- 가. 이의가 있는 경우 여수시청 수산경영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나. 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총 60개월까지)이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는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061-659-3921)로 발급 요청

**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여수시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 유의사항

1. 여수시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행정절차법」 제52조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여수시청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수시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행정절차법」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여수시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동법 시행령 제14조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10355	2025-72	마을어업	30	돌산 평사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굴전어촌계	
10356	2025-73	마을어업	30	남면 두모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남면 두모리	직포어촌계	
10357	2025-74	마을어업	19.5	남면 우학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남면 우학리	학동어촌계	
10358	2025-75	마을어업	81.42	화양 장수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자매어촌계	
10360	2025-76	마을어업	42.1	남면 유송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남면 유송리	함구미어촌계	
10362	2025-77	마을어업	81.6	화정 제도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제도어촌계	
10363	2025-78	마을어업	7	삼산 동도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죽촌어촌계	
10364	2025-79	마을어업	8	삼산 동도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죽촌어촌계	
10365	2025-80	마을어업	106.8	남면 안도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남면 안도리	안도어촌계	
10366	2025-81	마을어업	23	남면 유송	2015.11.08. 2025.11.07.	2025.11.08. 2035.11.07.	여수시 남면 유송리	송고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9. 29.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식회사 내일건설 (김*균)	전남 여수시 상암로 704, 1층	실내건축공사업 (전남보성2024-나-01)	205411-0013138	2025.9.29.	사업포기 (면허반납)

2. 공고 기간: 2025. 9. 29. ~ 2025. 10. 13.(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2881호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30일

여 수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 나. 위치(규모) : 여수시 공업지역 전역 (14.3km²)
- 다. 계획수립기관 : 여수시

2. 공개내용 및 방법

-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서 내용 (붙임1 참조)
- 나. 공개기간 : 2025. 09. 30. ~ 2025. 10. 20. (20일 이상)
- 다. 공개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3.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이내(2025. 10. 20.까지)
- 나.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관한 의견
- 다. 제출방법 (붙임2 서식)
 - 여수시 도시계획과 서면제출 또는 FAX(061-659-5833)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공 고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단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고,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의 감면 일몰제 적용기한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안 제8조의2)
 - 감면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9호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비율」의 박람회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지방교부세 페널티 제외 적용기한(2027.12.31.)과 감면기한을 맞춤

-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단순 오기사항 등 정비(안 제5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례의 감면 일몰제 적용기한 통일(안 제5조, 제7조, 제9조)
 - 일몰 적용기한 연장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감면 조항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입법 예고기간 : 2025. 9. 30. ~ 10. 20.(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보내는 곳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전화번호 : 061)659-3527, 팩스번호 : 061)659-5815
- 전자우편 : kes0318@korea.kr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2027년 12월 31일-----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

② 여수박람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및 여수박람회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략)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2027년 12월 31일-----

-----.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2025. 9. 30



여수시 조례 제2229호

붙임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② (생략)</p> <p>③ <u>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u></p>	<p>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30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시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정년퇴직자는 퇴직일 전 30일, 명예퇴직자는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퇴직준비휴가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⑮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와,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2. 여수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된 자

3. 기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별표 5 중 “(제14조제1항 관련)”을 “(제1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란 출산의 배우자란 다음에 출산의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25일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개정안)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20일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2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u>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u>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u>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⑤ (생략)</p>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p> <p><u><신설></u></p>	<p>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u>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u> ----- ----- ----- <u>실시할 수 있다.</u></p> <p><u><삭제></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p> <p>⑬ <u>시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정년퇴직자는 퇴직일 전 30일, 명예퇴직자는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퇴직준비휴가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⑭ <u>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p>⑮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와,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u> 2. <u>여수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 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된 자</u> 3. <u>기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u>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30일

여수시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31호

붙임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31호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성과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을 “성과우수·효행·모범”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여수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u>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 금품 지원</u></p> <p>5. ~ 7. (생 략)</p> <p>8. <u>성과우수· 효행· 모범· 장기 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u></p> <p>9. ~ 13. (생 략)</p> <p><u><신 설></u></p> <p><u>제16조 (생 략)</u></p>	<p>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5. ~ 7. (현행과 같음)</p> <p>8. <u>성과우수· 효행· 모범</u> ---- ----- ----- --</p> <p>9. ~ 13. (현행과 같음)</p> <p><u>제16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u> <u>시장은 여수시의회 의장과 협의 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u></p> <p><u>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u></p>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2232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u>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u></p> <p>2. ~ 8. (생략)</p>	<p>제6조(준용) ----- ----- ----- ----- ----- -.</p> <p>1. <u>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2. ~ 8. (현행과 같음)</p>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33호

붙임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33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 ----- 45만원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34호

붙임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3. “비상벨(안심벨을 포함한다)”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

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

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성인지 교육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

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시설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수시 사회복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①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公衆)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3.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4.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전 경 사 진</p>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 치 년 도				관 리 책 임 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 리 주 체	설 치 주 체									직 급	
	관 리 주 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 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 인 인</p>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장기영



여수시 조례 제2235호

붙임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자문범위)”를 “(직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고문료 지급)”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0,000원의 고문료”를 “300,000원의 자문수당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 ①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

③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자문 중 알게 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p> <p>제2조(자문범위) ①·② (생략) <신 설></p> <p>제4조(해촉) ① (생략)</p> <p>제5조(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의 고문료를</p> <p><신 설></p> <p><신 설></p>	<p><u>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운영 등---</p> <p>제2조(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p> <p>제4조(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5조(수당 등) ① ----- ----- 300,000원의 자문수당을-----</p> <p>②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 ①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p>

<신 설>

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

③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자문 중 알게 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2236호

붙임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중”을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가”를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교육수강 등을 위해”를 “교육수강 또는 공익성을 고려 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전대하지 못한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회관내”를 “회관 내”로 한다.

제10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주부

10. 「여수시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으로 한다.

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를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개정안]

수 강 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기술교육	1인1과목 1개월	15,000	
취미교육	1인1과목 1개월	10,000	
교양강좌	-	무 료	
유아수탁실	수강생의 교육서간 내	무 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의 <u>관리운영</u>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여성문화회관의 사용</u>”이란 <u>제1호의 시설중</u> 일부를 이용하여 각종 회의, 행사, 전</p> <p>3.·4. (생략)</p> <p>제3조(사용허가) ① (생략)</p> <p>②사용허가를 받은 <u>자가</u>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p> <p>제4조(사용제한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p> <p>6. 그 밖에 시장이 <u>교육수강 등</u>을 위해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p> <p>②·③ (생략)</p> <p>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u>전대하지 못한다.</u></p>	<p>제1조(목적) ----- ----- <u>관리·운영</u>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용</u>”이란 <u>제1호의 시설 중</u>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u> ----- -----</p> <p>제4조(사용제한 등) ①----- ----- -----</p> <p>6. ----- <u>교육수강 또는</u> <u>공익성을 고려하여</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 ----- ----- <u>대여할 수 없다.</u></p>

제9조(사용료 징수) ① (생략)

②시장은 사용료 및 수강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회관내 일정한 장소에 상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신설>

<신설>

<신설>

8. (생략)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징수한

1. 시설의 고장 및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

제9조(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 내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주부

10. 「여수시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

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3. (현행과 같음)

② -----
----- 수강을 취소할 경우

출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

-----.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안-----
-----.

제14조(준용) -----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장경기



여수시 조례 제2237호

붙임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 척수 기준)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선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에 따른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 1인 4척 이내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기 준

어업의 종류	어업방법	어장관리선의 척수
해조류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협 또는 어촌계, 개인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함) 단, 미역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및 김 100척 이상 200척 미만 2척 이내, 미역 200대 이상 300대 미만 및 김 200척 이상 300척 미만 3척 이내, 미역 300대 이상 김 300척 이상 4척 이내 지정
패류양식	수 하 식 바 닥 식 가두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하식, 가두리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5ha 이상 입어·행사자는 1인 2척 이내 지정 •수하식, 가두리식 양식어업 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다만, 5ha 이상 소유자(지분권자 포함)는 1인 2척 이내 지정 •바닥식 양식어업은 어장면적 10ha 미만 1척, 10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 •바닥식 양식어업 중 개인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을 같이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어장면적 10ha 이상인 경우는 1인 2척 이내
어류등양식	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ha 미만 1척, 1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 중 행사면적이 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 지정(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인 경우도 2척 이내 지정). 단, 축제식 양식어업은 1건당 1척 지정
복합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 합 양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하식, 혼합양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라도 1척에 한하여 지정) •수하식, 혼합양식 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바닥식 양식어업은 어장면적 10ha 미만 1척, 10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
협동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 류 양 식 복 합 양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의 척수기준과 동일(단,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도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 기준을 적용)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소형정치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3척 이내 •소형정치망 1건당 2척 이내
마을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별 마을어업 면허된 면적의 합계가 10ha 미만 1척, 10ha 이상 100ha 미만 2척 이내, 100ha 이상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38호

붙임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3.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u></p>	<p><u>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u> <u>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u> <u>3.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u> <u>4.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u> <u>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u> <u>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u>

<p><u>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우 <u><삭 제></u></p>
--	---------------------------------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30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39호

붙임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폭염·한파 피해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 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마.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한파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 및 한파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파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파 현황 및 전망
2. 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한파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한파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한파 대응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온열질환의료비

5. 손난로(핫팩) 등 방한용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및 스마트 그늘막 시설

4. 에어컨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스마트쉼터, 방풍시설, 온열의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한파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40호

붙임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 하고,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의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4.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5.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
2.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3.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금융·세제·법률 등 정보 제공
3. 실패 원인 분석 및 사업화 역량 진단 지원
4. 그 밖에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중장년 창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호



여수시 조례 제2241호

붙임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가구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그 밖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30일

여수시장 조기호 

여수시 조례 제2242호

붙임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 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2243호

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 당일에는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희경



여수시 조례 제2244호

붙임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원을 포함하여 공무원, 공무원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

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45호

붙임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계절”을 “시기”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의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정년퇴직자는 퇴직일 전 30일, 명예퇴직자는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퇴직준비휴가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⑬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⑭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2. 여수시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된 자
3. 기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u>계절</u>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u>실시</u>하여야 한다.</p> <p>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 ----- ----- ----- <u>시기</u>----- ----- ----- <u>실시할 수 있다.</u></p>
<p>③·④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특별휴가) ① ~ ⑪ (생략)</p> <p><u><신 설></u></p>	<p>제14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p> <p>⑫의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정년퇴직</p>

<신 설>

<신 설>

자는 퇴직일 전 30일, 명예퇴직자는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퇴직준비휴가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⑬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⑭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2. 여수시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 기관의 심의가 예정된 자
3. 기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46호

붙임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경비의 보조)”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3.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u>경비의 보조</u>) (생략)</p> <p><u><신설></u></p>	<p>제12조(<u>행·재정적 지원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여수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u> 2. <u>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u> 3. <u>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u> 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47호

붙임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

4. 여수시가 유치한 전지훈련(여수시에서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7. 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목욕탕과 수영장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가목(유아), 나목(어린이), 마목(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1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세대
 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장기기증자) 및 제3호(장기기증희망자)에 해당하는 자
 13. 두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인 세대원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제2조제2호 다목(청소년)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2호 바목(군인)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제9조제1호 중 “별표 8”을 “별표 8과 별표 9”로 한다.

별표 1 ~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세부 시설 명	소재지
진 남 체 육 공 원	· 진남경기장 · 진남체육관 · 야구장 · 실내야구연습장 · 인라인롤러경기장 · 씨름장 · 유도장 · 테니스장 · 실내테니스장 · 국궁장 · 보조운동장 · 족구장 · 게이트볼장 · 진남복합구장 · 진남배드민턴장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진 남 수 영 장	· 실내수영장 · 다목적실	여수시 내동1길2 (오림동)
망 마 경 기 장	· 주경기장 · 준비운동장 · 국궁장 · 게이트볼장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망 마 국 민 체 육 센 터	· 실내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장 애 인 국 민 체 육 센 터	· 다목적체육관 · 체력측정실 · 체력단련실 · 장애인목욕탕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웅 천 국 민 체 육 센 터	· 실내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여수시 웅천중앙로 106
흥 국 체 육 관	· 흥국체육관	여수시 선소로 93(학동)
돌 산 체 육 관	· 돌산체육관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18
시 립 테 니 스 장	· 시립테니스장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이 순 신 공 원 테 니 스 장	· 이순신공원테니스장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대
진 모 축 구 장	· 진모축구장 · 진모그라운드골프장 · 진모리틀야구장 · 진모풋살장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96
국 동 복 시 합 설	· 복합구장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울 촌 장 도 파 크 골 프 장	· 울촌장도파크골프장	여수시 울촌면 울촌산단2로 241-55

[별표 2] 일반(연습) 이용료 (개정안)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일반인 (100%)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80%)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50%)	제8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 (면제)	비 고
주경기장	천연	50,000	40,000	25,000	면제	구장당
	보조	40,000	32,000	20,000	〃	〃
보조구장	천연	30,000	24,000	15,000	〃	〃
	보조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진모)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망마-웅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500	1,200	750	〃	1명당
야구경기장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20,000	16,000	10,000	〃	실내이용기준
인라인롤러경기장		1,500	1,000	750	〃	1명당
테니스장 (1면당)	실외천연코 트	10,000	8,000	5,000	〃	1면당
	실외하드코 트	10,000	8,000	5,000	〃	〃
	실내하드코 트	15,000	12,000	7,500	〃	〃
진남배드민턴장		1,500	1,200	750		1명당
진남,홍국,돌산 체육관		30,000	24,000	15,000		구장당
족 구 장(실내)		10,000	8,000	5,000	〃	〃
게이트볼장		10,000	8,000	5,000	〃	〃
그라운드골프장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풋살장		25,000	20,000	12,500	“	“
유 도 장		10,000	8,000	5,000	〃	〃
씨 림 장		10,000	8,000	5,000	〃	〃
국 궁 장		1,500	1,200	750	〃	1면당
장애인 국민체 육센터	체력 측정실					장애인에 한함
	체력 단련실					〃
	장애인 목욕탕				2,000	〃
수영장	회원권(월)	60,000	48,000	30,000	30,000	강습료 : 12,500/월
	1회사용	4,000	3,200	2,000	1,500	
울 촌 장 도 파 크 골 프 장		2,000	1,600	1,000	면제	관외 거주자 5,000원 36홀 기준

비고

1. 이용시간 :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부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토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위 이용료의 150%로 한다.
3. <삭 제 >다음의 각 목의 사람은 일반인 이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 송환 및 태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역류자출신 포로가족~~
4. 수영장
 -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
 - 나. 단체입장 감경이용료는 1회 사용 시 일반인 3,000원, 청소년·군인·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1,500원으로 한다.
 - 다.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헬스장 이용료는 1일 2시간 이내 2,000원으로 한다. 또한, 세 가지(헬스장, 요가, 에어로빅)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강습료를 감경하여 월 80,000원으로 한다.(수영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제외한다)
 - 라. 수영장 강습료는 월 12,500원으로 한다.
5. 테니스장
 - 가. 테니스장(실외코트에 한정한다)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40,000원, 청소년·군인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테니스 강습을 받는 사람의 경우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월 6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48,000원으로 한다.
 - 나. 테니스 강습료는 일반인 월 9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72,000원으로 한다.
6.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가.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유아는 장애인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다. 장애인목욕탕 중 가족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하지절단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 1명의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감면대상자일 경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한다.
7. <삭 제 >진남수영장, 망마국민체육센터
 - ~~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이용요금은 월 55,000원으로 한다.~~
 - ~~나. 개인용 서물함 이용요금은 월 5,000원으로 한다.~~

[별표 3]

부속시설이용료(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비 고
전 기	라이트 시설 (구장별 조명)	구장/사용료(기본료+시간당전기사용료 합산)	기본료	전기사용료(1시간당)	* 기타시설은 시설용량 고려하여 별도 산정
		진남경기장	90,000	80,000	
		진남체육관	40,000	14,000	
		진남야구장	50,000	20,000	
		진남실내야구연습장	10,000	1,500	
		진남테니스장(실외)	6,000	1,000	
		진남테니스장(실내)	6,000	1,000	
		진남보조축구장	30,000	8,000	
		진남족구장	2,000	1,000	
		진남복합구장	30,000	8,000	
		홍국체육관	16,000	4,000	
		돌산체육관	9,000	3,000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7,000	1,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1,000	2,000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1,000	2,000	
		인라인경기장	50,000	20,000	
		진남수영장 회의실	10,000	5,000	
	일 반 전 기	기본료(1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전 광 관	대형 (주경기장) 5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소형 (주경기장) 3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냉·난방료	구장/사용료(기본료+시간당전기사용료 합산)	기본료	전기사용료(1시간당)		
	진남체육관	40,000	20,000		
	홍국체육관	30,000	10,000		
	돌산체육관	20,000	5,000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20,000	5,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30,000	10,000(가스사용료)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30,000	10,000		
음 향 설 비 (1일)	마이크 3개 기본 제공(1개√추가√시 5,000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 50,000원 테니스장(정구장), 기타 : 30,000원				
공 한 지 (3.3㎡당)	(7,000원×사용일수)			상행위 목적	

[별표 4] 행사사용료 (개정안)

시설별	구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주 경 기 장	육상장(트랙)		50,000	75,000	100,000	150,000	
	축구장 (필드)	천연	100,000	150,000	200,000	300,000	구장당
		인조	80,000	120,000	160,000	240,000	“
보조구장		천연	60,000	90,000	120,000	180,000	“
		인조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 진모)		60,000	90,000	120,000	180,000	구장당	
실 내 체 육 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다목적 체육관 포함	
야 구 경 기 장		60,000	90,000	-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40,000	60,000	-	-	구장당	
인라인롤러경기장		60,000	90,000	-	-	“	
테니스장	실외천연코트		20,000	30,000	-	-	1면당
	실외하드코트		20,000	30,000	-	-	“
	실내하드코트		30,000	45,000	-	-	“
진남배드민턴장		12,000	18,000			1면당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12,000	18,000			1면당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족 구 장(실내)		20,000	30,000	-	-	“	
게 이 트 볼 장		20,000	30,000	-	-	“	
그라운드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풋 살 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	
유 도 장		40,000	60,000	-	-	“	
씨 림 장		40,000	60,000	-	-	“	
국 궁 장		40,000	60,000	-	-	“	
울촌장도파크 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비고

1. 사용시간 : 기본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초과 시간 1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2. <삭 제 2022. 9. 2.>
3. 행사 참여인원(선수 및 사용자 측의 참여인원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 가. 행사 참여인원이 100~4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30%
 - 나. 행사 참여인원이 500~9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50%
 - 다. 행사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70%
4. 행사시설물의 사전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사용료는 행사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표 9] 수영장 이용권 및 사물함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분	내 용	반 환 기 준
월권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등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일권	사용 당일 취소	반환금액 없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3. (생략)</p> <p>②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p> <p>1. ~ 6. (생략)</p> <p>7.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p> <p>8. (생략)</p> <p>9. <u>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u></p>	<p>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u></p> <p>4. <u>여수시가 유치한 전지훈련 (여수시에서 3박 이상 숙박할 경우)</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p> <p>8.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훈련

10. ~ 12. (생략)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본항 신설 2021. 3. 15.>

1. ~ 8. (생략)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9. ~ 11. (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③ 제3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목욕탕과 수영장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본항 신설 2021. 3. 15.>

1. 제2조제2호의 가목(유아), 나목(어린이), 마목(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④ -----

1. ~ 8. (현행과 같음)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1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세대

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장기기증자) 및 제3호(장기기증희망자)에 해당하는 자

13. 두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인 세대원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제2조제2호 다목(청소년)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2호 바목(군인)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을 반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
용 또는 사용을 취소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 등을 별표 8에
따라 반환

2. ~ 5. (생략)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

-----.

1. -----

----- 별표 8과
별표 9-----

2. ~ 5. (현행과 같음)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승우



여수시 조례 제2248호

붙임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이전”을 “이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제6호”를 “제5호부터 제7호”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6.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6호 개정에 의한 요금 감면은 2026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현행	개정안
<p>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p> <p>·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 3. (생략)</p> <p>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며 이를 매년 3월 <u>이전</u> 시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p> <p>5.·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p> <p>-----</p> <p>----- <u>이내</u> -----</p> <p>-----</p> <p>-----.</p> <p>5.·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24조(감면 등) ① -----</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기초생활수급자</u></p> <p>2. ~ 4. (생략)</p> <p>5. (생략)</p> <p>6.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급여를 받는 사람</u></p> <p>2. ~ 4. (현행과 같음)</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p>6.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p> <p>7. 「<u>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p>
<p>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p>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2025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경호



여수시 규칙 제865호

붙임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업, 창업 지원 기술교육
2. 취미, 건강교육
3. 문화, 교양교육
4. 대강당, 소강당 등 대관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시정 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며, 매기별 신청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 12. 31)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여성”을 “주민”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를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감면 증빙자료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수강권의 양도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수강(이용)증”을 “수강권”으로, “승인없”을 “승인 없”으로, “전대하지 못한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회관운영상”을 “회관 운영상”으로, “구분없”을 “구분 없”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종료시 당 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력증명서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와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강사 등 위촉 심사 배점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배점기준	구분	배점기준
학 력 (10%)	1. 대학원졸이상 : 10점 2. 대졸이상 : 8점 3. 전문대졸 : 6점 4. 고졸이상 : 4점 5. 중졸이상 : 2점	전공 적합성 (10%)	1. 응시분야 관련전공 졸업 : 10점 2. 응시분야 관련 비전공 : 5점
강의경력 (20%)	1. 8년이상 : 20점 2. 6년이상 8년미만 : 18점 3. 4년이상 6년미만 : 16점 4. 2년이상 4년미만 : 14점 5. 1년이상 2년미만 : 12점 6. 6월이상 1년미만 : 10점	관련분야 강의경력 (20%)	1. 5년이상 : 20점 2. 3년이상 5년미만 : 18점 3. 1년이상 3년미만 : 16점 4. 1년 미만 : 14점
관련분야 강의자격 (30%)	1. 대학부교수(전문대학교수)이상, 직업훈련교사 1급 : 30점 2.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조교수) 이상, 직업훈련교사 2급 : 27점 3. 중등학교교사(전문대학 사간강사) 이상, 직업훈련교사 3급 : 24점 4. 실기교사,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인증서 : 21점	관련분야 강의능력 (20%)	1. 대학부교수(전문대학교수)이상 : 20점 2.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조교수), 직업훈련교사 1급, 기술사, 기능장 : 17점 3. 전문대학 강사 이상, 직업훈련교사 2급, 산업기사, 기사 : 14점 4. 실기교사,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인증서 : 11점
자격증 소지자 (20%)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1. 기술사, 기능장 등 : 20점 2. 기사 1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8점 3. 기사 2급, 기능사 1급, 능력평가 1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6점 4. 기능사 2급, 능력평가 2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4점	사회봉사 활동 (10%)	○ 전년도 1. 봉사활동실적 50시간 이상자 : 10점 2. 봉사활동실적 30시간 이상자 : 8점 3. 봉사활동실적 10시간 이상자 : 6점 4. 봉사활동실적 1~10시간 미만자 : 4점
사회봉사 활동 (10%)	1. 선행,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선도위원으로 장관이상 위촉 또는 시장표창 이상(최근 3년 이내),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40시간 이상자 : 10점 2.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30시간 이상자 : 8점 3.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20시간 이상자 : 6점 4.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10시간 이상자 : 4점 5.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10시간 미만자 : 2점	강사지원서 (10%)	○ 지원동기 및 활동 계획, 본인이 생각하는 강사상, 내용 작성에 대한 성실성, 적합성, 수상 및 연구실적 등 포함 1. 내용 평가 상 : 8~ 10점 2. 내용 평가 중 : 5 ~ 7점 3. 내용 평가 하 : 1 ~ 4점
국가기관 공공단체 근무경력 (5%)	1. 2년이상 : 5점 2. 1년이상 2년미만 : 4점 3. 6월이상 1년미만 : 3점	강의계획 서 (10%)	○ 강의목표 및 방향, 주차별 계획 관련 강의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창의성, 충실도 등 1. 내용 평가 상 : 8~ 10점 2. 내용 평가 중 : 5 ~ 7점 3. 내용 평가 하 : 1 ~ 4점
수상경 력 (5%)	○ 전국단위 : 5점, 도단위 : 4점, 시단위 : 3점 ※ 수상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인대회에 한함.	면접 (20%)	○ 강사로서 자질, 협업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성실도 및 도덕성, 시정관심도 등

[별표 2] <삭 제>

강사 등 위촉 심사표

과목명 :

구분	배점	개 인 별 평 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계	100점					
학 력	10					
관련분야 강의자격	30					
강의경력	20					
자격증소지자	20					
사회봉사활동	10					
국가기관, 공공 단체 근무경력	5					
수상경력	5					

여성문화회관 수강신청서					처리기간
					즉 사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여수시 읍면 리 번지 동 ① 동 호			전화번호	
신청과목				차당번호	
수 강 료	일금 원정 감 면				
감면사유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감면 여부	수수료	없 음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절 취 선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과목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개강식안내	년 월 일 : (시 분까지 입장완료)				
	장 소 :				
수 강 료	일금 원정 감 면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별지 제7호 서식] <삭 제>

여 성 문 화 회 관 수 강 신 청 접 수 대 장

결재			접수 번호	접수 년월일	신청자			수강과목	구분	수강료 (원)	비고
과장	담당주사	담당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업) ①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u>기술교육 : 미용, 양재, 한복, 제과, 조리(요리), 자수, 컴퓨터, 기타 필요한 교육</u></p> <p>2. <u>취미교육 : 공예, 원예, 서예, 꽃꽂이, 동양화, 서양화, 한국 무용, 한글, 외국어, 사진(비디오), 문예창작, 수지침, 스포츠, 노래교실, 요가, 건강관리, 기타 필요한 과목</u></p> <p>3. <u>교양교육 : 경제, 사회, 문화, 생활예절, 자녀 및 주부교육, 생활법률 등</u></p> <p>4. <u>유아실 : 교육 및 수강생 자녀중 아동(3세 이상부터 취학전 아동)을 일시보호</u></p> <p>5. <u>시설운영 : 사무실, 대강당, 소강당, 기타시설 등</u></p> <p>② <u>제1항의 교육사업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전부개정</u></p>	<p>제2조(사업) ①----- ----- -----.</p> <p>1. <u>취업, 창업 지원 기술교육</u></p> <p>2. <u>취미, 건강교육</u></p> <p>3. <u>문화, 교양교육</u></p> <p>4. <u>대강당, 소강당 등 대관</u></p> <p><u><삭 제></u></p> <p>② <u>시장은 시정 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며, 매기별 신청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u></p>

2009. 12. 31)

1.·2. (생략)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1. (생략)

2.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수강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성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생략)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에 미달할 경우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 12. 31)

1.·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

-----.

1. (현행과 같음)

2. -----
----- 주민-----

-----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감면 증빙자료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 신청하

②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시행이전에 여성문화회관 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얻어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여성문화회관 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 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수강(이용)증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생략)
②시장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강사위촉) ① (생략)
②위촉기간은 신규 위촉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자의 경우 교육과정별로 위촉한다.(전부개정 2009. 12. 31)

<신설>

<신설>

여야 한다.

제6조(수강권의 양도금지) 수강권

-- 승인 없-----
-----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 운영상 -----
----- 구분 없-----.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강사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①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위촉 구비서류) ①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 5. (생략)
6. 경력증명서(국가기관, 공공단체근무)

해연도 교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종료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강사위촉 구비서류) ①-----

1. ~ 5. (현행과 같음)
6. 경력증명서

<p>② (생략) 제11조(강사해촉) ①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강사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p>
-------------------------------------	---

2025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2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규칙 제866호

붙임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1부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규칙 제867호

붙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조례 제36조의2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10.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기준) ① 시장은 시설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 투자 보조금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라도, 시장이 신성장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보조금의 결정·정산)”을 “(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별표 3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안)

여수시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1	3	6	9	12	15	
사업 실적평가 (60점)	1. 평균매출액	1	3	6	9	12	15	
	2. 영업이익률	1	3	6	9	12	15	
	3. 부채비율	1	3	6	9	12	15	
	4. 기업신용등급	1	3	6	9	12	15	
투자사업 계획평가 (40점)	5. 신규투자규모	최대 30점						
	6. 투자기간	2	4	6	8	10		
조정점수	7. 별표 3의7 참조							
총 계								

타당성 평가기준(제16조 관련)

<사업실적평가>

①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150억 원 이상	15
100억 원 이상 ~ 150억 원 미만	12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9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6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3

- * 최근 3년 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 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 1년도 매출액)
- ※ 다만,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 기업과 평균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②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점 수
7% 이상	15
5% 이상 ~ 7% 미만	12
3% 이상 ~ 5% 미만	9
1% 이상 ~ 3% 미만	6
1% 미만	3

- * 최근 1년 이상 3년 미만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left[\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3} \right]$
- *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손익}}{\text{매출액}} \times 100$
- ※ 사업영위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직전 1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평가함
- ※ 다만,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③ 부채비율

부채비율	점 수
30% 미만	15
30% 이상 ~ 60% 미만	12
60% 이상 ~ 90% 미만	9
90% 이상 ~ 120% 미만	6
120% 이상 ~ 150% 미만	3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다만,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 기업과 부채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는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④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점수
BBB- 이상	15
BB- 이상	12
B0 이상	9
CCC- 이상	6
CCC- 미만	3

※ 기업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점 부여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투자계획평가>

⑤ 신규투자규모 : 최대 30점

평가척도	점수(최대 30점)
신규투자금액	10억 원 당 1점
투자사업장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 당 0.5점

* (신규투자금액) 설비(건설+기계장비)건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 부지매입금 (단, 제17조제2항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함)으로 계산, (상시고용인원) 신규 투자 사업장의 최근 1년간(공장등록일 또는 공장가동일부터 보조금 신청일 직전 1년) 평균 상시고용인원에서 10명을 감한 값으로 계산하며 소수점은 절사함

⑥ 투자기간

※ 산출근거 : 착공신고일 () ~ 공장등록일 () =

착공일로부터 공장등록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조정점수>

⑦ 조정점수

유 형	점 수
본사 또는 R&D센터	각 15점씩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중 에너지신산업*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수소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또는 강소기업*	

-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별표 1>
-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확인유형: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로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확인서」 로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확인서」 로 확인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투자완료 후 정산 시 재평가 항목임

물류, 도·소매업 투자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청 기업	명칭		대표자(국적)	
	설립일	년 월 일	공장등록일	년 월 일
	공장(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투자업종		업종(분류코드)	
	전화번호		F A X	
시와 투자협약 체결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투자금액		금 천원	상시고용인원	명
사업장 소재지				
투자 시설 내용	계	금 원		
	토지	m ²	투자금액	원
	공장 신·증설	m ²	투자금액	원
	기타	m ²	투자금액	원
공장 착공일		년 월 일	공장 준공일	년 월 일
보조금 담보 (담보기간)		예) 보증보험증권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		금 천원		
<p>「여수시 투지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 :)</p> <p style="text-align: center;">여수시장 귀하</p>				

*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은 해당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및 직접 투입된 고용인원을 기재한다.

《 구 비 서 류 》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13호서식) 2. 투자협약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대장 각 1부 6.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서 1부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차계약서 사본 (납부영수증 포함) 1부 7.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8. 보증보험증권 1부 9. 투자이행확약서 1부 10.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용)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12. 기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1부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①·② (생 략) ③ 보조금 유형별 신청기한은 <u>제14조</u>를 준용하여 적용한다.</p> <p>제13조(사업지원서비스업 보조금) ① ~ ③ (생 략) ④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지원서비스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유형별 신청기한은 <u>제14조</u>를 준용하여 적용한다.</p> <p><u><신 설></u></p>	<p>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5조</u>-----.</p> <p>제13조(사업지원서비스업 보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제15조</u>----- -----.</p> <p><u>제14조(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조례 제36조의 2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14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①</u>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p>	<p><u>제15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①</u>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u></p>

② 외국인 생활개선사업비 지원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용지매입 보조금 신청기한을 따르며, 학교시설로 개보수 및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물 매입,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의 보조금 신청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투자시설비·시설보조금의 신청기한을 따른다.

③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부지구입비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용지매입 보조금 신청기한을 따른다.

<신 설>

지원 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② -----

----- 제15조제1항제2호 -----

----- 제15조제1항제3호 -----

-----.

③ -----
----- 제15조제1항제2호 -----

-----.

제16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기준) ① 시장은 시설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 투자 보조금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라도 시장이 신성장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제15조(보조금의 결정·정산)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받아 투자업종 및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② ~ ④ (생략)

제16조·제17조 (생략)

제5장 보칙

<신설>

제18조 ~ 제21조 (생략)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① -----
----- 제20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제19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삭제>

제5장 보칙

제20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